

수신: 국회의장

제목: 『政黨法』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전송: 793-474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인

소개의원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종배)
전명	「政黨法」개정청원
소개년월일	1997년 5월 29일

소개의견

1.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오랜 지역주의, 보스중심의 정치구조하에서 지체와 퇴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정당의 물적,인적 기반은 정치부패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당운영의 각종 비민주적 관행은 특정인과 특정집단으로 대표되는 사당적, 봉당적 한계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솔직한 현실인 것입니다.
2. 현대적인 민주정당은 뚜렷한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은 일관된 이념과 정책적 기초는 들째치고라도 정당으로서의 갖춰야할 기본적 요소마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3. 정당의 근간이라 할 당원과 당비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의 의사는 아예 배제되거나 고려되지 않는 비민주적 관행이 팽배해 있습니다.
4.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당원 및 당비납부를 실질화 시킴으로서 정치부패를 뿐만 아니라 선진 정당의 기반을 형성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을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이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선진화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성숙한 민주정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이러한 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상과 같은 청원소개 의견을 제출하며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의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개의원: 이

청원서

청원제목 : 「政黨法」 개정청원

첨부 : 청원안 1부

조문대비표

1997년 5월 29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PSPD

『政黨法』 개정 청원

1. 개정취지

민주사회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자발적인 결사체이다. 정당은 이념과 정강정책에 기초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표과 기능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은 오랜 지역주의, 보스중심의 정치구조하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와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자체와 퇴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취약한 정당의 물적, 인적 기반은 정치부패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당운영의 각종 비민주적 관행은 특정인과 특정집단으로 대표되는 사당적, 봉당적 한계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당정치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정치부패의 근절, 민주정당의 기반 형성을 위한 당원 및 당비납부의 실질화

우리 정당의 당원은 선거시기에 급조되는 당원이 대부분이며, 그것이 아닐지라도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알고 성실히 이행하며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당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이 당원의 실체적 규모가 불분명할 뿐더러 선거이외의 시기 일상적인 당원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는 뚜렷한 이념과 정책을 무기로 시민사회의 기반을 갖지 못하고 지역과 인물중심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정당의 태생적인 한계로부터 발생하고 고착된 문제이다. 당원과 당비의 혀구화는 곧 정당의 물적, 인적 기반의 혀약함을 의미한다. 이로인한 폐해는 정-경유착 비리, 보스중심의 정당운영과 같은 그간의 과행적인 정치행태에서 수없이 목격하였다. 정당운영을 정상화 하고 정치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당원 및 당비납부의 실질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청원안에서는 당원명부에 대한 공개와 보고를 의무화하고(제 22조의 개정) 당비납부의 의무를 강화 하였다.

(2) 정당민주화의 핵심적 조치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절차의 민주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은 정당정치 발전의 핵심적 전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권한 배분이 필요하며, 모든 의사결정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운영은 총재1인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됨으로 사당적, 붕당적인 과행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와 원칙도 자의적으로 왜곡되거나 무시되기 일쑤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기반이라 할 당원의 의사와 참여는 아예 배제되거나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모든 공직선거에서 당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후보 추천의 권한을 사실상 총재가 독점하다시피 함으로써 당원은 제한된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고서는 정당의 민주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은 요원한 과제일 것이다.

이런점에서 이 개정안은 정당민주화의 핵심적 사항이라 할 공직선거후보 추천을 당원의 직접선거를 통해(제 31조의 개정)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2. 주요골자

가. 당원명부의 공개 및 의무보고(제 22조 ②항 개정, ④항 신설, 36조 개정)

나.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 강화(제 22조의 2 ②항 개정, 제 31조의 ③항 신설)

다.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제 31조 ②항 개정)

라. 입당강요 및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제 47조 개정, 제 48조 개정)

3. 개정전문

제 22조 [당원명부] ②제 1항의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와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제 1항의 명부는 매년 정기보고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2조의 2[당비] ② 당비납부 의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해야 하며,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당원은 제명해야 한다.

제 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②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 당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③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당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 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 47조 [입당강요죄등]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條文對比表

現行法	改方案
<p>제 22조[당원명부]</p> <p>①지구당은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p> <p>③범죄조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부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지 못한다.</p> <p>제 22조의 2 [당비]</p> <p>②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등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p>	<p>제 22조[당원명부]</p> <p>②제1항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와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p> <p>④제 1항의 명부는 매년 정기보고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p> <p>①정당의 공직후보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p> <p>②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 대의 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p> <p>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7조[입당강요죄등]</p> <p>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 22조의 2[당비]</p> <p>②당비납부 의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해야 하며,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당원은 제명해야 한다.</p> <p>제 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p> <p>①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 당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p> <p>②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당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자에 한한다.</p> <p>제 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p> <p>제 47조 [입당강요죄등]</p> <p>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8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p> <p>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 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p> <p>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